

## 공중이용시설

구분	대상 기준
<b>실내공기질관리법</b> (소관부처 : 환경부)	모든 지하역사
	지하도상가(연면적 2천㎡ 이상)
	철도역사 대합실(연면적 2천㎡ 이상)
	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(연면적 2천㎡ 이상)
	항만시설 대합실(연면적 5천㎡ 이상)
	공항시설 여객터미널(연면적 1천5백㎡ 이상)
	도서관(연면적 3천㎡ 이상)
	박물관 및 미술관(연면적 3천㎡ 이상)
	의료기관(연면적 2천㎡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)
	노인요양시설(연면적 1천㎡ 이상)
	어린이집(연면적 430㎡ 이상)
	어린이놀이시설(연면적 430㎡ 이상)
	대규모점포(전통시장 제외)
	지하장례식장(연면적 1천㎡ 이상)
	옥내전시시설(연면적 2천㎡ 이상)
	업무시설(연면적 3천㎡ 이상, 오피스텔 제외)
	복합용도 건축물(연면적 2천㎡ 이상)
	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
	실내공연장(객석 수 1천석 이상)
	실내체육시설(관람석 수 1천석 이상)
<b>다중이용업소법</b> (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㎡ 이상인 것) (소관부처 : 소방청)	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, 단란주점, 유흥주점
	목욕장(찜질방), 산후조리원
	안마시술소
	영화영상관, 비디오감상실, 비디오소극장, 복합영상물제공업
	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	노래연습장
	가상체육시설업(스크린골프장)
	학원
	실내(권총)사격장
	고시원, 화상대화·전화방, 콜라텍, 수면방
<b>시설물안전법</b> (소관부처 : 국토부)	교량(도로교량, 철도교량)(도로 외 설치된 3종 교량 제외)
	터널(도로터널, 철도터널)(연장100m미만 3종 지하차도 제외)
	옹벽 및 절토사면(공동구 제외)
	하천(하구둑, 제방, 보), 상·하수도(수문 및 통문, 배수펌프장 제외)
	건축물(공동주택 제외)
	항만(방파제, 파제제 및 호안, 계류시설)
	갑문 제외
<b>제3종시설물 등</b> (소관부처 : 국토부)	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
	「도로법」상 지방도·시도·군도·구도의 도로터널과
	「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」상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
	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
	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 (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)
	주유소(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㎡ 이상인 시설)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(개별 사업장 면적 2천㎡ 이상)	
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	